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용규정

제정 2022.12.23.

개정 2023.02.27.

2023.12.22.

(직제규정)

투자전략실(T.02-769-4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7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치마크지수(Benchmark Index)”란 전체 운용자산과 개별 운용자산군의 운용성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기준수익률 계산을 위해 사전에 설정된 지수나 지표를 말한다.
2. “위험관리”란 금융시장 환경의 불리한 변동에 대비하여 운용한도, 손실한도, VaR 한도 등의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인식, 측정, 평가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거래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

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가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4. “직접운용”이란 기금운용에 있어서 직원{자금운용관리단과 리스크법무실에서 근무하는 자금운용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근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 판단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운용”이란 기금운용에 있어서 투자 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용사에게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관해서는 관련 법, 영, 제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법, 영, 정관,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직원의 준수사항) 직원은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관 및 지침에 따라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1.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가. 연금운영위원회

나. 자산운용위원회

다. 수탁자책임위원회

라. 대체투자위원회

마. 투자위원회

2.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위원회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나.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② 연금운영위원회 및 투자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의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 이사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 위원은 각 위원회를 서로 중복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위원회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중에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안건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회의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가벼운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을 대리하여 제3자가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소관 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심의안건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는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및 신고를 위해 사전에 심의안건 배포와 함께 안내함으로써 위원들이 회피 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내부 위원 : 운영지침 제20조(징계양정 기준)를 준용함

2. 외부 위원 : 위원직 해촉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법하게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21조의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제22조의 부당이득의 환수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전자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회의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회의록은 회의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회의록을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제12조(자산운용위원회) ①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정관 제55조에 따라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산운용 위원회를 둔다.

②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지침, 본 규정 및 관련 시행규칙, 그 밖에 자산운용 관련 기준의 제정

및 폐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정책 등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3조(수탁자책임위원회) ①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이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수탁자책임위원회를 둔다.

②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단장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 활동 및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절차·기준·공시 등 검토

2.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의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등 검토

3. 수탁자 책임활동 실행 담당부서가 행사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내역 검토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가. 수탁자 책임활동 실행 담당부서에서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사항

나.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수탁자책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및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

라. 공개 중점관리기업 등에 대한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 주주활동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체투자위원회) ① 대체투자 및 신종증권 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대체투자위원회를 둔다.

② 대체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금융투자실장,
리스크법무실장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12.22.>

③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투자의 타당성 및 투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종증권투자의 타당성 및 투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투자위원회) ①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공단에 투자위원회를 둔다.

②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금운용관리단 내
실장 및 각 팀장(간사 제외)으로 구성한다.

③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에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금운용 관리단 내 직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투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위원회

제16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 자금운용의 위험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지원실장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 회의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때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④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운용에 따른 위험관리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위험한도 또는 손실 한도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위험의 측정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 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공단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자금운용 현황 및 자산의 변동사항
2. 자금운용 관련 규정의 준수사항 점검결과
3. 보유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 및 시장위험 주요 현황
4. 그 밖에 위험관리 관련 주요 사항

제17조(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① 자금운용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인재경영실장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운용 연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자금운용 성과평가 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자금운용 성과급 지급기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공단은 성과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체투자 공정가치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평가 관련 사항

3.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관한 자문 및 연구결과 사항
4.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요청하는 사항

제3장 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활동

제18조(책임투자) ① 공단은 지침에서 정한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증식을 목적으로 기업 경영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도록 투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경영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 경영(Environment) :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
2. 사회적 책임(Social) :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
3. 지배구조(Governance) : 회사의 경영진인 이사회와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투자 및 그 밖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 장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19조(수탁자 책임 활동) ① 공단의 투자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과 이행에 따른 기준, 절차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다.

③ 공단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지속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공단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탁자 책임 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자금운용

제1절 자금운용 일반사항

제20조(자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지침에서 정한 자산배분에 따라 연간 및 월간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수지 추정 및 배분
2. 적정 유동성 규모
3. 자산군별 배분 계획 등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자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월간 자금배분 계획

2. 자산군별 운용계획

④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월간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월간 자금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연간 자금운용계획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금운용) ① 공단은 자금수지 및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한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투자자산별, 운용자별로 투자금액을 적정하게 배분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운용의 운용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연기금투자플 위탁) 공단은 「국가재정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기획재정부의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설치한 연기금투자플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거래기관 선정 원칙) ① 거래기관은 기금을 위한 기여도, 금융정보 제공, 거래의 안정성 및 거래상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거래기관 선정을 위한 자산군은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증권 직접 운용으로 한다.

③ 거래기관 선정 및 배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거래기관의 제한) ①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거래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래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금융감독당국 등에서 법률위반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기관의 제재 방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국내채권 직접운용

제25조(국내채권 직접운용의 원칙) ① 국내채권 직접운용은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채권을 종류, 발행자, 만기 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분산 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권은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 채권과의 스프레드(Spread, 가산금리)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듀레이션(Duration,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 투자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을 조절하여 초과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내채권의 투자대상) 국내채권의 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국채, 지방채, 통안채)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7항에 따른 공사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채권(특수채)

3.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금융채)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행채)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산업금융채)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금융채)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농업금융채)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금융채)

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채)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여신금융채권)

5.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회사채)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ABS)]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MBB) 또는 주택저당증권(MBS)

8. 기업어음(CP)

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전자단기사채)

10. 외국기관(외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 표시 채권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성질을 갖춘 것

제27조(국내채권의 신용등급) ① 국내채권 신용등급은 2개 이상의 신용

평가 전문기관(자본시장법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 최근에 평가한 신용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을 적용한다.

② 채권 중 제26조제1호를 제외한 채권의 투자 신용등급은 BBB+(제8호 및 제9호는 A3+)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평가 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때에는 발행기관 또는 준거 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③ 보증채권(발행기관의 원리금 지급에 대하여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투자는 발행기관과 보증기관의 신용등급 중에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채권 투자에는 신용등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국내채권의 투자한도) ① 국내 채권의 발행기관별 투자 한도는 투자 당시 채권 총 투자액(액면금액 기준) 기준으로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6조제1호

2. 제26조제1호의 발행기관이 보증하는 채권

③ 채권의 투자 한도는 투자 당시 발행기관(보증채권은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중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관)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공단은 신용채(제26조 국내채권의 투자대상 중 국채를 제외한 모든 채권)의 운용 비중을 BM의 같은 신용채 비중 대비 +10퍼센트포인트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권의 운용 비중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단기자금의 운용) ① 단기자금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전성 및 유동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단기자금의 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기업어음(CP)
2. 발행어음(자본시장법 제324조, 제336조 및 제360조에 따른 각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
3. 양도성예금증서(CD)
4. 정기예금
5.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MMDA)
6.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7. 환매조건부채권(RP)
8. 자산관리계좌(CMA)
9. 전자단기사채
10. 그 밖에 투자위원회에서 단기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상품

③ 단기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취급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은행 :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퍼센트 이상일 것
3. 보험회사 : 지급여력(RBC) 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일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금융기관 : 신용등급 AA- 이상(MMF 등 실적 배당상품은 제외)일 것

④ 단기자금의 금융기관별 투자한도(예치잔액 기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및 연기금투자폴 MMF : 제한 없음
2. 그 밖의 상품 : 500억원

제3절 국내주식 직접운용

제30조(국내주식 직접운용의 원칙) ① 국내주식 직접운용은 허용된 위험 한도 내에서 수익을 최대한 증식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식운용은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주식종목 섹터별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국내주식의 투자대상) 국내주식 직접운용의 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증권상품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KRX)가 선정한 KOSPI 200 구성 종목
2. KOSPI 200 지수에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공모주 청약 포함)
3.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제32조(국내주식 종목별 투자한도) ① 공단은 같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② 공단은 같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시가 기준 보유 잔액이 공단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종목 중 KOSPI200 내 시가총액 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종목은 시가총액 비중의 100분의 1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해외증권 직접운용

제33조(해외증권 직접운용의 원칙) ① 해외증권 운용은 시장의 효율성, 통제가능성, 정보이용의 용이성, 투명성, 유동성, 위험수준, 거래비용, 거래프로세스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증권 직접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해외채권의 투자대상) 해외채권 직접운용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기관(외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
2.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
3. 외국의 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으로서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성질을 갖춘 채권
4. 외화표시 채권과 동일한 신용등급 체계를 가진뱅크론
5. 외화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제35조(해외채권의 신용등급) ① 제34조 각 호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신용등급은 BBB-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투자일로부터 최근에 공시된 자료를 적용한다.

② 해외채권 신용등급은 3개 신용평가 전문기관(Standard & Poor's, Moody's Investors Service, Fitch Ratings)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수에 따라 결과가 나뉘는 등급을 적용한다.

1. 3개 전문기관 평가등급
 - 가. 3개 기관이 다른 때 : 중위 등급
 - 나. 2개 기관이 같은 때 : 해당 등급
2. 2개 전문기관 평가등급
 - 가. 2개 기관이 다른 때 : 낮은 등급
 - 나. 2개 기관이 같은 때 : 해당 등급

3. 1개 전문기관 평가등급 : 해당 등급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때에는 발행기관 또는 준거 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④ 보증채권 투자의 신용등급은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해외신용등급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제36조(해외채권의 투자한도) ① 해외채권 중에 제34조제3호 및 제4호 직접운용에 대한 투자 한도는 투자 당시 해당 채권의 발행기관 자기자본 대비 및 제5호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각각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인용한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해외채권은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해외주식 직접운용 방법) ① 해외주식 직접운용은 자산군별 운용 정책에 따라 투자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자산군 안에서 투자전략, 투자대상, 운용방법, 벤치마크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은 수익 추구전략과 예상 위험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8조(해외주식의 투자대상) 해외주식 직접운용의 투자 대상은 지침 별표 2에 따라 해외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로 하되, 레버리지(Leverage,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 및 인버스(Inverse, 지수와 역방향으로 수익을 추구)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제5절 대체투자 운용

제39조(대체투자의 운용원칙) ① 대체투자는 다양성 및 비정형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체투자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만기 보유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의 만기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점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채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상환 만료 시점
2. 비영속적 법인(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은 소멸된 시점
3. 영속적 법인의 주식은 투자할 때 정한 시점
4. 위탁운용은 투자할 때 정한 시점

③ 제2항에 따른 대체투자의 만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후에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요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대체투자의 범위) ① 대체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투자
2. 인프라 투자
3. 사모 투자
4. 벤처 투자
5. 헤지펀드 투자
6. 자원개발 투자

7. 신종증권 투자

8. 그 밖에 대체투자 성격으로 거래되는 투자

② 제1항에 따른 대체투자를 위해 필요한 요건,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대체투자 신용등급등의 배제) 대체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자산에 포함되는 채권, 주식 등 증권에 대해서는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 각 직접운용의 신용등급 및 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2조(대체투자의 사후관리) ① 공단은 대체투자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투자된 회사의 경영성과

2. 경영진의 변경

3. 그 밖에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전문가의 활용) ① 공단은 대체투자자와 관련하여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 집행, 사후관리 등을 위해 법률, 재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이나 용역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투자회사 관리인 추천) 공단은 투자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투자회사에 이사 및 감사 등 관리인을 추천

할 수 있다.

제45조(신종증권의 투자) ① 공단은 신종증권(금리, 주가, 환율, 신용 등과 관련한 기초자산의 가격, 지표 및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종증권은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여 신중하게 투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신종증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FRN)
2. 역변동금리부채권(Inverse FRN)
3.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
4. 변제요구권부채권(Putable Bond)

제6절 위탁운용

제46조(위탁운용의 원칙) ①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이하 “위탁운용사”라 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탁운용사와의 운용계약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47조(위탁운용 투자대상등의 배제) 위탁운용은 다양성 및 회수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대상이 되는 상품에 포함되는 채권, 주식 등에 대해서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 제35조, 제38조 각 직접운용의 투자 대상 및 등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8조(위탁운용사) 기금의 외부 운용을 위한 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질적인 운용 활동을 하지 않은 때에는 실제로 운용하는 자를 위탁운용사로 본다.

1. 영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영 제87조의2제2항 각 호의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는 자
3. 영 제8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6의2호까지의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사업을 하는 자
4. 영 제8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49조(위탁운용사의 선정) ①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영 안정성
2. 운용실적
3.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4. 운용조직 및 인력
5. 위험관리 체계
6. 그 밖에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운용사는 다음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정

한다.

1. 일괄 방식 : 공고 절차를 거쳐 사전에 정해진 선정기준에 따라 여러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해 함께 심사하는 방식

2. 건별 방식 :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부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해 심사하는 방식

③ 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절 파생상품

제50조(파생상품의 거래) ①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주가, 이자율,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헤지 거래 :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유사·관련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장래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투자하는 파생상품 거래

2. 차익 거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 해당 상품을 동시에 거래하여 무위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가. 현물과 해당 선물물의 가격

나. 현물과 해당 합성선물(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 또는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를 통해 선물과 같은 손익구조를 가지도록 구성한 옵션 포트폴리오)의 가격

다. 선물과 해당 합성선물의 가격

3. 환 헤지 :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공단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액(환익스포저)의 관리를 위하여 투자하는 파생상품 거래

4. 스프레드 거래 : 초점을 맞춰 결제월이나 거래시장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선물계약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동시에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5. 그 밖에 위탁운용사가 위탁운용 계약에 따라 투자하는 파생상품 거래

③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거래 대상은 KOSPI 200으로 하며, 포지션 한도는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범위로 한다.

④ 금리선물의 거래 대상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선물, 통안증권 선물 등으로 하며, 포지션 한도는 보유채권 시가총액의 범위로 한다.

제51조(파생상품의 범위)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익스포저의 헤지를 위하여 거래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화선물

2. 선물환

3. 스왑거래

4. 그 밖에 환익스포저 헤지가 가능한 파생상품

제5장 위험관리

제1절 위험관리 일반사항

제52조(위험관리의 원칙) ① 위험관리는 기금운용 관련 모든 업무가 법·영·정관·지침 등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위험의 적절한 허용·관리를 통해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측정하며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출되는 위험은 그 한도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연간 리스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 관련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리스크관리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지침에 따라 결정된 자산배분에 따라 연간 리스크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리스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도설정 및 관리 (운용한도, 위험한도 등)
2. 대체투자 및 신종증권 사전 위험관리
3.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4. 그 밖에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자금운용의 리스크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위험관리 전담부서) ① 공단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관련 위원회 및 전담 조직 등을 구성하고 의사결정 체계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이 운영되도록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5조(비상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경제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시장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침의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손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기 상황의 정의 및 단계

2. 위기 상황의 판단지표 및 단계별 조치

3. 위기 상황 관련 보고

4. 위기관리 대책반의 구성·운영 등

5. 그 밖에 자금운용 관련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 수립 후 위기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비상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 제56조(위험한도의 설정)** ① 위험한도는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으로 구분하여 각 자산군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위험한도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접 및 위탁운용, 펀드 등으로 세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자산군에서 대체투자는 제외하며, 위험한도의 설정 및 측정은 VaR(Value at Risk,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일정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으로 잠재적인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로 한다.
- ③ 위험한도는 기금운용 환경이나 전략의 변경, 자산운용 성과, 위험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위험별 관리

제57조(위험관리의 구분) 공단은 지침에 따라 위험을 시장, 신용, 유동성, 법규, 운영 등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신용위험의 관리) ① 신용위험 대상은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변화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단은 발행기관의 부도 및 신용 악화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무 상태 악화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위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시장위험의 관리) ① 시장위험 대상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② 시장성이 부족한 투자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위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유동성위험의 관리) 공단은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을 매입할 때 대상 종목의 재무구조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1조(법규 및 운영위험의 관리) 공단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및 운영위험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직원의 준수사항을 준용한다.

제3절 자산군별 위험관리

제62조(자산군별 위험관리) ① 공단은 지침에 따라 분류된 자산군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군별로 위험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군별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위탁운용의 모니터링)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단은 위탁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와 그 밖에 외부 전문가에게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의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성과평가

제64조(성과평가의 원칙) ① 기금운용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신뢰도를 제고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는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운용실적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성과평가의 기본 단위는 지침에 따른 자산군으로 하고, 성과평가의 다양한 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직접 및 위탁, 운용조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직제규정」의 변경 및 인사이동으로 성과평가 단위를 조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운용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위탁운용사 성과평가) 제48조에 따른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 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자산운용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청렴서약서(제9조 관련)

제출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위촉직위 : ○○○위원회 위원

성 명 :

본인은 위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해당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 해촉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알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단의 「기금운용규정」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근거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
(뒷면 참조)임을 안 때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하고 해당 심의안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 ○ ○ (서명)

[뒷면]

「기금운용규정」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p>제9조(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심의안건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p> <p>② 각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는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각 위원회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및 신고를 위해 사전에 심의안건 배포와 함께 안내함으로써 위원들이 회피 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공단은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부 위원 : 운영지침 제20조(징계양정 기준)를 준용함 2. 외부 위원 : 위원직 해촉 <p>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법하게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21조의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제22조의 부당이득의 환수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전자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p>	<p>제5조(사적 이해관계자) 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적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6.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7.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위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8. 그 밖에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령·기준에 따라 위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위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